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6
----------	------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변경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기능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위탁계약 조항의 일부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세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탁 기간 개정(안 제9조)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개정(안 제11조)
- 다. 위탁계약의 위탁기간 변경 및 재위탁 횟수 제한(안 제15조)
- 라. 어린이집 비용 보조 세부 내용 개정(안 제18조)
- 마. 어린이집연합회 사업비 보조 세부 내용 개정(안 제18조의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일부개정안)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22. 10. 07. ~ 2022. 10. 27. [21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일부 수용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가족여성국 보육정책과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 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하며”를 “호선(互選)하며”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육”을 “영유”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조제2제1항”을 “영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3이상”을 “1/3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그러”를 “경우에는 그러”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학과가개설된”을 “학과가 개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을 “장애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일부를보조한다”를 “일부를 보조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저소득주민”을 “도시 저소득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관 만료일이 학기 중 일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 중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를 “(비용의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를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로, “범위 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2. 영유아반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 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 활성화 지원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집연합회”를 “어린이집 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유아 놀이체험

제19조 중 “시설등”을 “시설 등”으로 하고, “범위안에서 운영비등 기타”를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그밖에”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22조 중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여성보육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여성보육과장 김 교 성
	팀장 직위·성명	보육지원팀장 구 선 미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유 승 희 (790-555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 ----- ----- ----- 이바지함-----.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 호선(互選)하며----- ----- ----- -----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제4조(위원회의 기능) ----- -----. 1. 영유----- ----- -----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7.3.> ② (생략)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만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시장은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영 제10조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③·④ (생략)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 ----- 해당 위원----- -----. ② ----- 영 제10조의2제1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1/3 이상----- -----. -----.

③ (생 략)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③ (생 략)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위원회의 수당) ----- 범위 안-----
 -. ----- 경우에
 는 그러-----.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학과
 가 개설된 -----
 -----.
 ④ -----
 --- 5년-----

 한 차례만 -----.

제11조(센터의 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인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보조한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

제11조(센터의 업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에 따라 ----- 별
 위 안----- 일
 부를 보조한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
 ----- 고려하

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도시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생략)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생략)

제14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 ① (생략)

여 -----.

1. 도시 저소득주민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운영) -----
----- 그 밖에 -----
----- 따른 -----

제15조 (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학기 종료일로 한다.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 할 수 없다.

제18조(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영유아육성사업에 필

음)
② 위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이거나 위탁기관 만료일이 학기 중일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제한) -----
----- 관할구역 안-----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 국공립어린이집-----

-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 범위 안-----
-----.

②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보육아동급식비·난방비·공공요금등 운영비를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8조의2(사업비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생략)
2. 어린이집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2. 영유아반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 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 활성화 지원
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삭제>

제18조의2(사업비 보조) 어린이집 연합회

1. (현행과 같음)
2. 영유아 놀이체험

3.·4. (생략)
제19조(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어린이집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보육시설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생략)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생략)

제22조 (준용)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3.·4. (현행과 같음)
제19조(장애아·영아전담·야간·휴일어린이집의 보조) -----

----- 시설 등 -----
-----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그밖에 -----
-----.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

-----.

1. (현행과 같음)
2. ---- 목적 외-----

3. 거짓이나 -----

4. (현행과 같음)

제22조 (준용) -----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제2항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영유아반 지원(민선8기 공약/ 신규사업)
 - 추진배경 :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로 보육 활성화 도모
 - 추진시기 : 2023년 1월 예정
 - 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 내용
 - 지 원 액 : 반당 100천원/월
 - 지원대상 :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영유아반(국공립, 직장 제외)
 - 지원내용 : 영유아반 운영비(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운영 유지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 사 업 명 : 영유아반 지원(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1,140	1,146	1,152	1,158	1,164

-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영유아반 지원	-	-	-	-	-	-	
세 출	1,140	1,146	1,152	1,158	1,164	5,760	
영유아반 지원	1,140	1,146	1,152	1,158	1,164	5,760	
재원 조달	1,140	1,146	1,152	1,158	1,164	5,76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40	1,146	1,152	1,158	1,164	5,760
	지방세	1,140	1,146	1,152	1,158	1,164	5,7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2022. 6. 7.>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p49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다. 업무위탁(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 업무위탁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계약

기간을 갱신할수 있음.

※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 2] <개정 2015.1.28.>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 2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